

탈식민화와 ‘새로운 프랑스 국민’

- 알제리 전쟁 전후 알제리인의 프랑스 유입과 국적법 변화-*

박 단**

목차

- I. 머리말
- II. 알제리 전쟁을 전후한 알제리인의 프랑스 유입
- III. 1973년 국적법- 국익의 정점
- IV. 1993년 국적법- ‘새로운 프랑스 국민’의 출현
- V. 맺음말-프랑스에서의 국적법 변화 추이와 그 의미

I. 머리말

“알제리, 프랑스 - 한 국민인가 아니면 두 국민인가?” 프랑스의 유명 정치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는 1995년 5월 파리 국제철학대학(College International de Philosophie)에서 개최된 한 콜로키움에서 이와 같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¹⁾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프랑스는 알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09935)

**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리에서, 알제리와 함께, 그리고 알제리에 맞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와 알제리의 역사를 각각 분리시켜서, 그리고 특히 서로 상반된 것으로서 다시 사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알제리와 프랑스는 충분히 분리되지 않았다” “두 나라는 진정으로 두 개가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²⁾ 결국, 알제리와 프랑스, 이 두 개의 이름이 가리키는 실재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국민’이라는 개념과 함께 국적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자문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알제리와 프랑스, 프랑스와 알제리 국민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하나의 국민이었다가 두 개의 국민으로 나뉘었다.³⁾ 이는 알제리가 독립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구분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프랑스로 이주한 알제리인들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알제리인인가, 프랑스인인가? 더 나아가 이들의 2

1) 알제리 오랑대학교 및 작가의 집과 공동 주최로 열린 “알제리-프랑스 : 교차된 시선들” 콜로키움 발표.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옮김, 『정치체에 대한 권리』(후마니타스, 2011), pp.92-110.

2) 같은 책, pp.92-95.

3) 알제리는 공식적으로는 1834년 2월 24일 왕령(l'Ordonnance royale)으로 프랑스에 병합되었다. 이 당시 무슬림 원주민이나 유대인 원주민은 프랑스인이 되었으나 시민권(des droits civils)과 정치권 (des droits politiques)을 갖지 못한 신민으로서의 국적(nationalité de sujet)을 갖게 되었을 뿐이다. Patrick Weil, “Le statut des musulmans en Algérie coloniale Une nationalité française dénaturée”, Association française pour l'histoire de la justice, *Histoire de la justice*, 2005/1(N.16), p.95. 이는 1865년에도 재확인되었다. 1865년 상원(the Senatus-Consulte)은 알제리인들을 법적으로는 “프랑스인”으로 규정했으나 그들이 이슬람 신앙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시민권에서 제외시켰다.(<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789907p/f9.image>) 마이클 브릿에 따르면, “이슬람은 열등한 것으로 정의되었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법이 의미하는 것은 무슬림은 동시에 프랑스인일 수 없다.”는 뜻이었다. Michael Brett, “Legislating for Inequality in Algeria: The Senatus-Consulte of 14 July 1865.”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51/3 (1988): 440-461. 1870년 10월 24일 크레미유 법(décret Crémieux)으로 알제리 거주 유대인에게만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세대들은 어떠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프랑스의 국적법 개정에 따라 이들은 알제리인이기도 하다가 프랑스인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의도는 탈식민화 후 '프랑스 국민'에서 '새로운 프랑스 국민'으로 거듭나는 알제리 이주자들과 그들 2세의 국적 변화 문제를 역사적 배경과 함께 고찰해 보는 데 있다.

알제리인의 프랑스로의 유입 문제는 어느 나라의 이주자 입국 문제와는 달랐다. 우선 식민지 시기와 독립 이후 프랑스로의 유입,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알제리인의 유입은 그 유입 시기에 따라 프랑스와 알제리 모두에게 몇 가지 특수한 문제를 야기했다. 탈식민화 이전에는 알제리가 프랑스의 도(道)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이들이 '프랑스인'으로서 프랑스에 입국하는 것이었다면, 1962년 독립 이후에는 새로운 국가의 시민으로서 프랑스에 입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알제리와 프랑스 사이 야기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알제리 전쟁 시기의 이주문제는 어느 이주와 다른 또 하나의 문제를 파생시켰으며, 독립 방식이 이주자에 남긴 문제 또한 간단하지 않았다. 전 세계적인 탈식민화의 여파에 주요 제국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영국 식민지들의 독립방식과는 달리 프랑스의 식민지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알제리의 경우는 무력이 포함된 저항 방식을 통하여 독립을 이룸으로써 구식민지 이주자의 상황에도 '특별함'이라는 라벨이 붙을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의 어느 식민통치 기간보다도 길었던 132년 간 통치를 받았기에, 알제리인들이 일찍부터 프랑스에 상당수 거주했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20세기 들어서는 17만 5천 명의 알제리인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식민모국 프랑스를 위해 싸웠으며, 그 가운데 3만 5천 명이 사망하기도 했고,⁴⁾ 그 대가로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은 종전 후인 1926년

4) 4만 명이 참전(12,000명 사망)한 모로코인, 8만 명이 참전(21,000명 사망)한 튀니지인, 18만 명이 참전(25,000명 사망)한 블랙아프리카인, 4만 9천명이 참전(1,600명이 사망)

7월 ‘파리 대모스크’(la Grande Mosquée de Paris)를 프랑스 정부로부터 ‘선물’받기까지 했다.⁵⁾ 프랑스는 식민지에서 파견된 군인 혹은 노동자 약 25만 명을 ‘그들 나라’로 환국시켰지만 그럼에도 프랑스에 남아 있는 무슬림은 대략 50만 명에 달했으며, 그 대다수는 알제리인이었다.⁶⁾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알제리인을 포함한 북아프리카 군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직후 상황에서 유럽계 이민자들과 비교할 때 알제리인은 프랑스 체류 이주자 비율로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할 뿐이었다.⁸⁾ 결국, 오늘날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프랑스 내 무슬림이민자, 특히 알제리인 이주 문제는 ‘영광의 30년’ 기간 이주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급속히 성립됨에 따라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과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라 불리는 유럽부흥계획을 통해 서유럽국가들에 엄청난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일으켰다. 소위 ‘영광의 30년’(1947-1973)이라 불리는 기간 동안 프랑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노동력을 외부에서 수혈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서 알제리를 비

한 인도차이나인 등과 비교할 때 알제리인의 참전 수와 사망률은 매우 높다. Pascal Blanchard et Sandrine Lemaire, *Culture coloniale, la France conquise par son Empire (1873-1931)*(Paris: Editions Autrement, 2002), p.117. 알제리인 사망자 수는 자료에 따라 25,000-28,000명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5) Maurice Barbier, *La laïcité* (Paris: L’Harmattan, 1995), p.98.

6) Neil MacMaster, “Islamophobia in France and the Algerian Problem,” in Qureshi, Emaran & Michael A. Sells (ed.), *The New Crusades : Constructing the Muslim Enemy*(Columbia Univ. Press, 2003), p.291.

7) 신동규, 「<영광의 날들(Indigène, 2007)> 에 나타난 북아프리카 출신 군인의 정체성: 프랑스와 식민지 사이에서 정체성 만들기」, *Homo Migrans*, Vol.9(Dec. 2013).

8) 1946년 기준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 가운데, 유럽출신이 88.7%, 아프리카 출신이 3.1인데, 그 가운데 알제리 이민은 1.3%에 불과하다. Patrick Weil, *La France et ses étrangers*(Paris : Gallimard, 1991), annexes.

롯한 무슬림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적어도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 파동'(oil crisis)이 있기 전까지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 제한 조치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대통령이 취임한 1974년 이후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이민자 제한 조치는 적극성을 띠게 되었고 이는 이후 프랑스의 국적정책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개정했던 1973년 국적법이 그 대상이 된 것은 명백했다. 여기에 외부 변수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1954년부터 시작되어 1962년까지 지속되었던 알제리 전쟁은 알제리인의 이주 규모와 이주자의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인'에서 졸지에 '외국인'이 되어버린 알제리 이주자들에 대한 국적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성을 띠었다. 독립 이전에 프랑스에 정착한 사람들의 국적문제와 이들 2세의 국적문제는 이후 커다란 쟁점이 되기에 충분했다. 국적을 부여하는 데 관용적이었던 1973년 국적법이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그리고 1998년 재개정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많은 논쟁을 낳았다. 이는 프랑스 권력체계의 특수성, 즉 동거정부의 존재로 인해 더욱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는 이처럼 노동력이 필요할 때에는 프랑스의 구식민지에서의 출생도 프랑스 본토의 출생으로 간주하여 프랑스 국적을 부여했고, 전쟁으로 인하여 징집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이들에게 국적을 포기하지도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3년 말 석유 파동과 잇따른 경기침체가 문제가 되면서 결국 1993년 국적법으로, 구식민지와 독립한 해외 영토 출생인 사람들에게 부여되던 속지주의(jus soli)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는 국익에 따른 국적법 개정과 무슬림이주 문제에 따른 프랑스 국민의 정체성 강화라는 두 가지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⁹⁾

본고에서 우리는 알제리 전쟁과 관련된 알제리 이주문제의 특수성을 우

선 고려한 후, 노동력 확보라는 국익 우선 차원에서의 1973년 국적법의 성격, 그리고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알제리이주자 2세대의 국적문제 및 국적법 개정 등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알제리 전쟁 전후 알제리 이주자의 유입과정을 살펴볼 것이며, 다음으로 1973년 법의 제정 동기에 특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알제리인 이주자들의 2세대와 국적법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탈식민화로 인하여 프랑스에서 ‘새로운 국민’이 어떻게 정의되고 탄생하는지를 역사적 맥락 하에서 평가할 것이다.

II. 알제리 전쟁을 전후한 알제리인의 프랑스 유입¹⁰⁾

여기에서는 프랑스로 이주한 알제리인들의 국적법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프랑스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알제리 전쟁을 거치면서 프랑스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알제리인들의 상황, 독립 후 이들의 이주를 억제하려던 프랑스 당국과 알제리 정부의 협상 등 이주자 규모를 둘러싼 프랑스와 알제리의 노력이 고찰될 것이다.

두 차례의 세계전쟁 이후 알제리인들이 프랑스에 대규모로 입국하게 된

9) 이 시기 무슬림 이민자와 국적법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한명숙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명숙은 세 편의 논문을 통하여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국적법 변화를 무슬림 이민자, 프랑스의 정치 문제와 연관하여 고찰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의 관련 연구에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한명숙, 「무슬림공동체의 현황과 국적법」, 『인문학 연구』, Vol.10(2006) ; 「프랑스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문제, 1986-1993」, 『프랑스사연구』, 제20호(2009) ; 「1980년대 프랑스 국적법 논쟁을 통해서 본 무슬림 이민자 문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8-3집(2008).

10) 알제리 전쟁 이후 알제리인들의 프랑스 유입 문제는 필자의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서강대출판부, 2013) 제3장의 내용에서 일부분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것은 프랑스가 1947년 마샬플랜으로 경제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기초산업을 강조하게 되면서였다. 프랑스로서는 유럽부흥계획으로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대규모 주택건설, 제철, 화학, 자동차, 가전산업을 활성화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노동력을 구하는 일은 불가피하였다. 냉전체제의 여파로 동구권을 제외한 서유럽국가에 미국의 경제지원이 집중됨으로써 전쟁 전과 같이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 이웃국가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프랑스는 자연스레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식민지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수 만 명의 알제리인들이 프랑스로 건너오게 되었다.¹¹⁾ 사실 알제리는 당시 프랑스의 행정체계 하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관련되는 규정에 엄매일 필요가 없었으며 그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특별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¹²⁾ 그렇다고 알제리인들의 대규모 유입에 프랑스인들의 시선이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이미 이전부터 프랑스인들은 '무슬림 알제리인들'을 다른 유럽계 이민자들과 비교해 인종적으로 제일 낮은 등급으로 간주하고 있었다.¹³⁾ 또한 일부에서는 이들 이민자들이 프랑스 본토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엄격한 제한 규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여론과 정치인들을 설득하기도 하였다.¹⁴⁾

한편, 당시 알제리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이들은 왜 모국을 떠났을

11) 이탈리아의 경우 여전히 해외이주가 많았다고 하지만 프랑스의 노동력 수급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탈리아인들의 해외이주와 국내이주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경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인들의 해외 이주와 국내 이주」, 『서강인문논총』, Vol.45(2016.4).

12) Yvan Gastaut, "Des Trente Glorieuses à la crise des banlieues", in *L'Histoire*, n.229(février, 1999), pp.49-50.

13) Neil MacMaster, "Islamophobia in France and the Algerian Poble," p.291.

14) *Ibid.*, p.292.

까? 이들이 알제리 전쟁을 기회로 갑자기 조국을 등진 것은 아니었다. 알제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은 19세기 말엽 이미 ‘탈농민화’(dépeysannisation)되고 있었다.¹⁵⁾ 1871년 대봉기로 44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상실한 알제리 농민들은 알제리 내의 식민자 농장을 떠돌다 일부는 프랑스로 이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다.¹⁶⁾ 하지만 본격적인 이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였다.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인들’은 이 당시 이탈리아인¹⁷⁾과 함께 프랑스로 들어온 노동력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¹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947년부터 알제리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3년까지 프랑스로 이주한 알제리인은 74만 명 정도 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 이들 가운데 56만 명은 알제리로 되돌아갔고, 약 18만여 명은 프랑스에 계속 남았다.¹⁹⁾ 2차 세계대전 전에 프랑스로 이주한 알제리인들은 대체로 베르베르어를 쓰는 카빌리아(Kabylie) 지방 출신이었는데 비하여, 전후에는 알제리 대부분 지역, 즉 오랑(Oran), 콩스탕틴(Constantine) 심지어 사하라 남쪽 등 알제리 대다수 지역에서 프랑스로 이주해 왔다. 프랑스로서는 노동력이 상당수 필요하였고, 그만큼 특별히 출신 지역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이렇게 볼 때, 알제리 전쟁 이전 알제리인들의 프랑스로의 이주 및 환국은 프랑스의 경제성장 혹은 노동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알제리의 경제사

15) 김용우, 「식민주의와 이주-압델말렉 사이아드(Abdelmalek Sayad)의 경우-」, *Homo Migrants* vol.17(nov. 2017), pp.70-72.

16) Ibid.

17) Patrick Weil, *La France et ses étrangers*, pp.63-64.

18) Ralph Schor, *Histoire de l'immigration en France : de la fin du XIXe siècle à nos jours*(Paris : Armand Colin, 1996), p.198.

19) David Assouline, Mehdi Lallaoui(s.d.), *Un siècle d'immigrations en France : 1945 à nos jours*(Paris : Syros, 1997), p.14.

20) Ibid.

정도 크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프랑스 당국이 자신들 마음대로 알제리 노동자들을 프랑스로 '불러들였다-내보냈다'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알제리인들도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법률 및 행정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최적의 피난처였다고 할 수 있었다.²¹⁾ 하지만 이들이 프랑스에 체류하더라도 1년 혹은 2-3년을 넘지 않은 채 양국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주 형태도 독신이 대부분이었다.²²⁾ 즉, 이 시기 알제리인의 이주는 '귀국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일시적으로 정착한 노동이주였다.²³⁾ 이러한 상황으로 이들은 프랑스사회에 제대로 동화하기에 매우 부적합하였다. 지리적 근접성으로 알제리 이주자들이 가족과 함께 프랑스에 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이는 자연히 알제리인들이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는 데는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마르세유(Marseille)에서 배로 24시간이면 닿을 거리여서 '고국'을 쉽게 오갈 수 있었던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유럽계 노동자들처럼 프랑스의 노동계급에 통합되기도 어려웠다. 당시 노동조합이나 공산당 등도 이들 알제리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혼한 동화의 통로였던 노조 및 정당이 이들에게는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²⁴⁾

그러면 8년간의 알제리 전쟁은 알제리인의 이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느 정도 그 성격을 변화시켰을까? 독립전쟁 직전인 1953년에 약 18만 명의 알제리인이 프랑스에 거주하였다면, 1954년에는 약 21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전쟁이 끝난 해인 1962년에는 35만 명이 거주하였다.²⁵⁾

21) Ahsène Zehraoui, "Les Algériens, de l'immigration à l'installation," Philippe Dewitte(s.d.), *Immigration et intégration l'état des savoirs*(Paris: Editions la Découverte, 1999), p.121.

22) Benjamin Stora et Emile Temime, p.125.

23) Ahsène Zehraoui, p.122.

24) Neil MacMaster, "Islamophobia in France and the Algerian Poble," pp.292-293.

알제리인의 수는 전쟁 동안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증가하였다.²⁶⁾ 전쟁 기간임에도 이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 시기가 프랑스로서는 ‘영광의 30년’ 기간으로 경제적 호황기였으며, 알제리로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어렵던 경제상황이 한층 더 어려워진 시기이기 때문인 것은 분명했다.²⁷⁾ 프랑스는 50여만 젊은이들이 징집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노동력이 계속 필요했고, 특히 저렴한 알제리인 노동력은 프랑스 경제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²⁸⁾

하지만, 알제리인들은 전쟁 전보다 훨씬 비우호적이 되어버린 프랑스인들의 태도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랑스군인과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LN) 간에 벌어진 테러, 고문, 학살 등²⁹⁾으로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은 매우 격앙되어 있었다. 게다가 1961년 10월 17일 사건³⁰⁾은 프랑스 내 알제리인들이

25) 알제리가 독립한 해인 1962년 인구조사 시에는 누가 알제리인인가의 문제, 즉 알제리인은 ‘알제리인’인가 ‘프랑스인’인가와 같은 매우 미묘한 문제가 발생했다. David Assouline, Mehdi Lallaoui(s.d.), p.16.

26) Patrick Weil, *La France et ses étrangers*, p.65.

27) 알제리인들의 탈농민화는 독립전쟁의 와중에서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이는 이른바 알제리농민 ‘재정착’(regroupement) 작전의 결과였다. 대체로 알제리의 북부 해안 지역은 식민자들의 농장이 들어선 반면 내륙의 건조한 산악지대에 알제리 농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민족해방전선의 게릴라 부대는 프랑스에게 큰 위협이었다. ‘재정착’ 정책이란 이런 산악 지대에 흩어져 살던 알제리 농민들을 새로 만든 수용소에 강제로 이송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알제리인들의 지원을 차단하려는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 230만 가량의 알제리 농민들이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프랑스 군대의 감시 하에 살아가는 수감자 신세로 전락하였다. Moritz Feichtinger, “‘A Great Reformatory’: Social Planning and Strategic Resettlement in Late Colonial Kenya and Algeria, 1952 - 63,”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52-1(2017), p.56. 김용우, 「식민주의와 이주-압델말렉 사이야드(Abdelmalek Sayad)의 경우-」, p.71에서 재인용.

28) Benjamin Stora et Emile Temime, p.128.

29) 이재원, 「프랑스 공화국은 “알제 전투(batailles d’Alger)”에서 운명을 다했는가?」, 『사립』 54권 (2015).

30) 노서경, 「식민지배의 기억 :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 사회」, 안병직(편), 『세계의 과거

결코 프랑스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알제리 전쟁의 투사들로서 '내부의 적'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에 프랑스의 노동력 유입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프랑스 본토의 여론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알제리 이민자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에서 깊은 적대감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³¹⁾ 게다가, 이주자 수의 증가는 프랑스인들에게 또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1962년 알제리 독립 시기 프랑스 내 알제리인 수는 35만 명이었으나, 1973년에는 84만 5천명으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침략"이라고 느낄 만큼 눈에 띄는 수치였다.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적인 공동체가 가까운 곳에 거주함으로써 그 긴장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었다. 마르세유 지역에 대규모로 거주하는 알제리 이주민과 피에 누아(pieds noirs)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알제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마르세유에는 알제리 이주민뿐만 아니라 알제리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유럽계 거주민인 피에 누아가 100만 명 가까이 거주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켰다.³²⁾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정부는 노동력 공급처로 가능한 한 알제리 이외의 다른 국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동력의 수급을 유럽인 혹은 그마저도 어려우면 다른 마그레브 국가 출신으로 다변화시키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포르투갈인의 대거 유입이나 이 시기 모로코, 튀니지 이주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1962년에 5만 여명에 불과하던 포르투갈 이주자들은 1968년에는 약 30만 명, 1975년에는 약 7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포르투갈의 국내사정도 있었지만 이들을 노동력으로 맞이하려 했던 프랑스의 정책과도 부합하였음은 물론이다.³³⁾ 그 외 모로코인이 1975년에 25

사 청산』(푸른역사, 2005).

31) Neil MacMaster, "Islamophobia in France and the Algerian Problem," p.293.

32) *Ibid.*, p.294.

33) 포르투갈인은 여권 없이도 자유롭게 프랑스에 들어올 수 있었다. Patrick Weil, *La*

만여 명, 튀니지인 14만 명, 블랙 아프리카인들이 8만 명 정도 유입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³⁴⁾ 그렇다고 알제리인 이주자가 줄어들었을까? 역설적으로 알제리 이주자의 숫자는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62년 35만 여명에서, 1975년에는 그 수가 70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³⁵⁾

이처럼 알제리인의 이주를 제한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인의 이주는 줄지 않았다. 이는 여러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알제리 내 기반시설의 철저한 파괴와 해방된 수만 명의 알제리인 죄수, 그리고 퇴역군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농토 등 알제리 사회의 구조적 동요, 수많은 소기업들의 폐쇄 등도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³⁷⁾

이러한 결과 1963년에는 약 26만 명의 알제리인이, 1964년에는 약 27만 여 명이 프랑스에 입국했는데, 이는 알제리로 귀국한 사람들의 수보다 약 4-5만 여 명씩 초과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정부가 결코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전쟁이 가져온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³⁸⁾ 이렇게 프랑스에 남게 된 사람들은 당시 국적법 상으로 사실상 프랑스인이기도 하였지만, 프랑스정부로서는 알제리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거류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들의 체류에 어느 정도 관대할 수밖에 없었다.

France et ses étrangers, p.68.

34) Yvan Gastaut, p.51.

35) *Ibid.* 1975년의 알제리이주자 수는 필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들의 평가는 대략 70-90만 명 사이를 오간다. 벤자맹 스토라와 에밀 테뫼는 1975년 프랑스에 거주하는 알제리인을 대략 90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Benjamin Stora et Emile Temime, p.128.

36) David Assouline, Mehdi Lallaoui(s.d.), p.22.

37) Benjamin Stora et Emile Temime, p.128, p.130 ; 김용우, 위의 논문, pp.70-72.

38) *Ibid.*, p.130.

III. 1973년 국적법 - 국익의 정점

알제리 이주자들이 모국의 독립 이후에도 프랑스의 국적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가능했을까? 이 장에서는 식민지 프랑스인이었던 알제리인들이 식민모국이었던 프랑스에서 국적을 얻게 되는 과정과 프랑스가 이주자들에게 국적 획득의 문을 더 개방하게 된 계기를 국내외 상황과 연계하여 살펴볼 것이다.

식민지인이자 무슬림이던 알제리인 이주 1세대들이 처음 프랑스에 들어올 때부터 그리 환영받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상당수의 알제리 출신 무슬림 이주자들이 프랑스로 입국했는데, 이들은 이 시기의 프랑스 국적 정책 관련자들 대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민자들로 취급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알제리인들은 프랑스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다른 이주자들과 함께 이 시기에 프랑스에 대규모로 이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알제리의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은 프랑스 국적을 용이하게 유지 혹은 획득할 수 있었다.³⁹⁾ 1973년 1월 9일 제정된 국적법은 외국인인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 왜 그렇게 관용적이었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선 1973년 법의 제정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국적법은 전통적으로 인구학적 관심사와 크게 연결되어 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사가 더욱 강하여 이전 시기에 거부되었던 귀화 요건에 대해 정부가 더 우호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예를 들자면, 단지 한 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나 나이든 사람, 심지어 1953년 이후부터는 혹시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만약 이들이 “쓸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귀화가 허

39) Vincent Viet, *La France immigrée, Construction une politique 1914-1997*(Paris : Fayard, 1998), pp.200-208.

락되었다.⁴⁰⁾ 게다가 동화(5년 이상 프랑스 거주 요건)와 가족결합이 프랑스국적 취득의 지배적인 기준이 됨으로써 귀화 승인 비율이 1960년대 초 77%에 비해, 1967년 이후에는 85%를 상회하게 되었다.⁴¹⁾ 이처럼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프랑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던 것이 바로 ‘영광의 30년’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프랑스는 안정된 노동력 수급을 위해 이주자들을 항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프랑스인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 프랑스로서는 노동력을 제공할 국가를 가급적 더 늘림으로써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원했지만 탈식민화 시기와 맞물린 시대적 상황은 프랑스에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그렇다하더라도, 프랑스 국적법에 남아있는 이중속지주의(double jus soli)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식민지인에게 적용된 속지주의 원칙은 188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889년 속지주의 원칙에서 정의하는 ‘지(地)’가 파격적으로 확대되면서,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태어난 것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것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1889년 6월 26일의 국적법은 프랑스 본토뿐만 아니라, 식민지로 지배했던 영토에서 출생한 이들까지도 성년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⁴²⁾ 이 기준에 따르면 1962년 알제리 독립 이전까지 알제리에서 태어난 것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것과 같았다.⁴³⁾ 결국 이주자 3세대 자녀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자동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부여받았고, 이는 거부할 수도 없었다.

40)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Paris: Grasset, 2002), p.161.

41) *Ibid.*

42) Patrick Weil, “L’histoir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 une leçon pour l’Europe,” in Patrick Weil et Randall Hansen(s.d.), *Nationalité et citoyenneté en Europe*(Paris: La Découverte, 1999), pp.60-61.

43) 1962년 알제리 독립 이후 프랑스에서 태어난 알제리이주자 2세는 그 부모가 알제리에서 태어났다하더라도 이중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le double *jus soli*) 프랑스 국적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알제리 출신의 유대인이나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였다.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p.274.

이중속지주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전후 경제 재건에 직면한 프랑스에
게 있어서 노동력 공급의 가장 핵심적인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1973년 국적법에도 그대로 담겨 있을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간 측면도 있다. 1973년에는 본토와 구식민지뿐만 아니라 해외영
토까지도 국적권이 통일되면서 더욱 많은 프랑스 관련 영토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프랑스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식민지로
지배하던 알제리뿐만 아니라 사하라이남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이중
속지주의의 원칙이 확대 적용되어 프랑스의 국적이 부여되었다. 게다가
때로는 마그레브 국가들과의 쌍무협정이 이루어져, '출생지'가 마그레브
국가로도 확대됨으로써 이주자들이 프랑스 입국과 더불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알제리 독립 이후에도 알제리 출신 이주자들은,
1962년 7월 21일 행정령에 따라 프랑스의 보통법 호적부에 올라와 있으면
계속 프랑스 국적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에서만 법적 지위
(statut de droit local)를 갖는 이들과 그 자녀들은 1967년 3월 22일 이전에
프랑스에 고정된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신고하면(déclaration de
reconnaissance), 완전한 프랑스 국적을 얻을 수 있었다. 무슬림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되었다.⁴⁴⁾

이런 점에서 1973년의 국적법은 이주자의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국적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단, 부모 중 한 명이 1962년 이전 알제리에서 태어
난 경우, 그 아이는 이중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출생 시 프랑스 국적을 자
동 부여받지만 동시에 성년이 되어서도 프랑스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듯 1973년까지의 프랑스의 이중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국적취
득조건은 광범위한 국적부여와 더불어 전쟁과 경제 재건을 위한 노동력
수요에 따른 국적포기금지로 설명될 수 있다.⁴⁵⁾

44) Ordonnance n° 62-825 du 21 juillet 1962. *Ibid*, p.161.

45) *Ibid*, pp.161-162.

1973년 법은 이 뿐만 아니라, 국적 자체와 관련하여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프랑스 시민의 배우자가 프랑스 국적을 쉽게 얻을 수 있게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1973년 법은 이중속주주의를 도입한 1889년, 국적취득의 조건을 대폭 확대한 1927년에 이어 국적 개방에 정점을 찍은 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점이라 함은 이후의 국적 법안들이 이중속주주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국적법이 남녀평등 문제, 혼외 자 문제 등에 전향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크게 보아 외국인의 귀화 등 국적 획득을 한층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⁴⁶⁾

사실, 1973년 법은 1945년 법(Code de 1945)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었다. 저명한 비교 국제법 학자 앙리 바티폴(Henri Batiffol) 교수가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주도한 법안은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의 국적법을 통합하고 프랑스인 모친의 혼외 자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프랑스 국적부여를 허용할 수 있게 하였다.⁴⁷⁾ 의회는 이 법안을 더 폭넓게 수정하였으며, 1962년부터 1967년까지 국적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직에 있었던 푸아이에(Jean Foyer) 또한 이 법안을 담당하여 프랑스 민법을 심도 있게 개정하였다. 그는 후견인 제도, 결혼 및 상속제도, 친권과 친자관계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혼외 자와 합법 자식 간에 평등한 지위가 보장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하였다. 법무부 일부의 유보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푸아이에는 의회 법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국적의 범주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결국, 1973년 1월 9일자 법령으로, 1803년 이래 처음으로 국적법과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지위가 채택되었다.

푸아이에가 주도한 국적과 연관된 남녀평등 법이 ‘영광의 30년’ 동안 크게 확대된 이주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물론 제기되었지만,

46) *Ibid.*

47) <http://legifrance.gouv.fr/affichTexteArticle> (검색일자 : 2016.12.1)

정작 푸아이에 자신은 이 법안이 그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에게 프랑스 국적을 개방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⁴⁸⁾ 여기서 그의 생각을 일부 소개해 보자.

“1946년과 1964년 사이 내국인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이웃나라들처럼 현재 이민 국가인데, 미래에도 이민 국가로 남아있을 것 같다. 제국의 군대에 근무하기를 거부했던 6세기의 로마인들처럼, 20세기의 유럽인들은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오늘날도 그 당시처럼 이민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민이 (로마 시대와) 동일한 위험을 내포할 수도 있는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민정책은 필요하다. 이런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기란 항상 쉽지 않다. 그러나 이민정책이 어떻든 지간에,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이민자들은 국가의 공동체로 통합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의 새로워진 국적법은 불필요한 불화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국가 공동체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장구한 역사과정에서 보면, 프랑스는 놀라운 용광로였다. 프랑스인은 갈리아-로마인과 게르만족의 용광로에서 나왔다. 이 수정 법안은 다른 민족과의 융합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인종주의는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범죄를 만드는 끔찍한 어리석음일 뿐이다.”⁴⁹⁾

이처럼, 푸아이에에는 이민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가 초안한 법안은 기존 법안들이 직접적으로 노동력 수급과 관련 없다고 본 남녀평등, 혼외 자 문제 등까지 고려한 세심한 법안이었다. 이는 노동력 수급과 관련하여 프랑스 국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있고난 지 수개월 후, ‘오일 쇼크’로 인하여 1974년 7월 3일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이 중단되었고, 푸아이에의

48)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p.162.

49) *Ibid.*, p.163에서 재인용.

주장도 사람들에게 바로 잊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이 시기(1975년) 프랑스에 344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는 프랑스 인구의 6.2퍼센트에 달하는 수치였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알제리인이 71만 명으로 약 76만 명의 포르투갈인 다음으로 프랑스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비록 프랑스 정부가 출신 국적에 따른 구분으로 “바람직한 이민”을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인은 상대적으로 쉽게 프랑스에 올 수 있었고, 국적 또한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영광의 30년 동안 이에 대한 제한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⁵⁰⁾

하지만, 알제리 전쟁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서, 즉 석유 파동 이후 알제리인의 이주 문제가 프랑스 내부에서 첨예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의 문제 역시 점차 강력히 제기되고 있었다.⁵¹⁾ 1981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 출신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이 당선된 이후, 좌파는 기존의 우파 정부가 수립했던 정책에서 선회하여, 이주자들의 프랑스로의 유입과 정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13만 명에 달하는 불법 노동자들을 합법적 노동자로 등록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983년 지자체 선거에서 좌파가 패배하자, 정부는 정책을 좌편향에서 중도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1984년 6월 하원은 외국인의 거주와 관련된 사항을 “10년 허가증” 하나만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처음으로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우파 정당(프랑스민주연합/공화국연

50) 그 외, 에스파냐인 497,000명, 이탈리아인 462,000명, 모로코인 260,000명, 그리고 튀니지인 139,000명이 주요 외국인 통계에 나타난다.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p.165.

51) 알제리 2세대의 국적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치권이 뜨거울 무렵, 그들보다 수가 더 많은 포르투갈 이주자에 대한 논의는 이상하리만치 거의 없었다. Roger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139. 1980년대 국적법 논쟁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한명숙, 「1980년대 프랑스 국적법을 통해서 본 무슬림이민자 문제」를 참조할 수 있다.

합)과 좌파 정당(사회당/공산당) 간 합의를 이루어낸 것에 의의가 있으며, 과거의 강제적 귀환 정책이 프랑스에서 종말을 고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국적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는 알제리 출신 프랑스 거주자들 자녀들의 국적문제였다.⁵²⁾

1973년 국적법 개정은 인구센서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알제리 이주자에 관한 통계도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 1982년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알제리 이주자 수는 79만 5천 명으로 이는 1975년의 88만 4천 명에 비하여 거의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에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알제리인이 61만 5천 여 명으로 알제리 이주자 수가 현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⁵³⁾ 하지만, 이는 알제리 출신 이주자 가운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알제리 출신이 1980년대에 40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이들 가운데 3분의 2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었다.⁵⁴⁾

IV. 1993년 국적법 -‘새로운 프랑스 국민’의 출현

구식민지 출신의 사람들이 프랑스 시민이 되는 데 우호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1973년 국적법의 23조에 기록되어 있는 이중속주주의에 근거하여 프랑스 정부는 1962년 독립 이전에 알제리에서 태어난 알제리인의

52)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p.168.

53) 이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인 아이들에게 프랑스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함을 의미한다. *L'Histoire*, n.229(février, 1999), p.40.

54) Benjamin Stora et Emile Temime, p.131.

자녀들을 프랑스인으로 간주하였다.⁵⁵⁾ 우리가 이곳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알제리이주자 2세대가 프랑스인이 될 수 있었던 근거인 프랑스의 이중속지주의 원칙과 그 폐지로 인한 ‘새로운 프랑스 국민’의 출현이다. 기존의 법은 2세대들에게 ‘강제적인’ 국적 부여를, 1993년 국적법 개정은 2세대들에게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표명할 것’을 강제하였다. 이는 일부 알제리이주자 2세대에게는 프랑스인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굴욕적인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알제리이주자 2세대의 국적문제는 198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소위 프랑스 내 ‘무슬림 2세대 정체성문제’와 연계시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제3공화국 시절인 1889년에 제정된 이중속지주의 관련법은 1927년 법을 거쳐 1973년 법에도 그대로 존속된 국적법 조항으로 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강제적 국적 부여 정책을 담고 있었는데, 이 법의 영향으로 인해 알제리이주자 2세대들과 이들의 부모에게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알제리 전쟁 때 알제리 측에 참전했던 사람들로, 이들 2세가 프랑스 국적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프랑스인이 된다는 것은 이 알제리인들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⁵⁶⁾

처음에는 이 문제가 크게 비화되지 않았으나, 1982년에 접어들자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이 점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출생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양국의 국적 모두를 보유하고 있던 알제리이주자 2세대들이 양측 국가에서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알제리 영사관의 요구를 받은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자신의 의지 없이 프랑스인”이 된 청년들이 프랑스에 충성하지 말 것을 독려하

55) 23조에 적용되지 않는 이주자 2세대들은 44조에 의해 국적을 얻었다.
<http://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 (검색일자 : 2016.12.1)

56)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pp.168-169.

는 캠페인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 프랑스-알제리 양국 간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⁵⁷⁾

알제리 정부는 프랑스가 국적법 23조를 개정하여 자신들의 동포가 이러한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프랑스는 이러한 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다. 알제리의 뜻대로 법 조항을 수정하게 된다면, 이것이 프랑스에게는 1962년 이전의 알제리가 프랑스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었다. 1982년 4월, 프랑스 정부 각 부서 간 회의에서 내무부 장관 가스통 드페르(Gaston Defferre)는 알제리가 요구한 국적법 23조의 수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알제리가 오랫동안 요청했던 사항들을 승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거 프랑스의 알제리 지배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드페르의 이러한 움직임은 저지되었고, 국적법 23조는 끝내 개정되지 못하였다.⁵⁸⁾

“이중 국적에 따른 군 복무” 문제는 결국 알제리의 입장 변경으로 해결되었다. 알제리 정부는 프랑스에 예전부터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송환이라는 오래된 논쟁점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제리 정부가 ‘일시적 거주민’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항구적 거주자’로 프랑스에 정착했다는 사실 앞에서 알제리 정부는 프랑스의 알제리 공동체에게 이러한 이중 국적이 ‘미국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식이란, 이중 국적은 더 이상 알제리인들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알제리인들이 프랑스 내 알제리 커뮤니티에 모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57) 이에 대해서는 알제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Benjamin Stora, *Le Transfert d'une Mémoire : De l'Algérie française au racisme anti-arabe*(Paris : La Découverte, 1999).

58)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pp.168-169.

제도임을 말하였다. 이어 군 복무에 대한 협정이 프랑스-알제리 간에 체결되었는데, 알제리게 프랑스 청년들은 자신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프랑스 또는 알제리 두 국가 중 한 곳에서만 군 복무를 수행하면, 다른 쪽에서도 군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이러한 조치가 자신들의 전통적 국적법을 해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해했다.⁵⁹⁾

1973년 법은 우파가 동거정부의 한 축으로 정권을 잡은 시기인 1993년, 새로운 국적법(메에뉴리법 loi Méhaignerie)에 의해 일부 조항이 개정, 삭제되었다.⁶⁰⁾ 이중속지주의에 의한 자동적 국적부여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프랑스에서 태어났더라도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사람은 프랑스 국적을 자동으로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사람은 16세에서 21세 사이에 자신이 프랑스인이 되겠다는 ‘의지 표명(la manifestation de volonté)’과 동시에 프랑스 내 5년간 연속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했다.⁶¹⁾ 역시 기한 내에 의지 표명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프랑스 국적은 영원히 획득할 수 없게 했다.⁶²⁾ 이는 그들에게 프랑스 국적을 택하지 않을 권리를 주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공화주의 전통에 따른 속지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

59) *Ibid.*, p.169.

60) 1990년대 국적법 개정에 대해서는 Miriam Feldblum, *Reconstructing Citizenship : The Politics of Nationality Reform and Immigration in Contemporary France*(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특히, Ch.8 “Nationality Reform in the 1990s”를 참조할 수 있다.

61) 거주 기간을 명시함은 해당 인물이 프랑스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사회화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27년 법의 귀화(naturalization) 항목에서 기존의 10년 거주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적법에 따른 거주 요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진영, 「전간기 프랑스의 국적 정책 변화」(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참조.

62) 이 조건조차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다. 모로코, 포르투갈, 터키의 2세대들에게는 이탈리아, 폴란드 혹은 무국적자의 2세대들보다 더 많은 조건이 요구되었다. Patrick Weil, “L’histoir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 une leçon pour l’Europe,” p.66.

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세대들은 프랑스 정부의 의도대로 프랑스 국민의 정체성 강화 노력에 동참해, 종던 싫던 '새로운 프랑스 국민'으로 거듭나야 했다.

1993년 법이 사회당을 비롯한 각계로부터의 많은 비난에 직면하자, 정권이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간 틈을 타 1998년, 사회당 의원인 엘리자베스 기구는 새로운 국적법(기구 법 la loi Guigou)을 발의해 다시 이들 이주자들에게 국적취득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했다. 1998년 3월 16일의 기구법은 국적취득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었다. 즉 이 법에 따르면, 13세에 부모의 동의하에 프랑스인이 될 수 있고, 16세에는 부모의 동의 필요 없이 프랑스인이 될 수 있으며, 18세에는 완전한 권리를 갖는 프랑스인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이 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수도 있다. 5년간의 연속 거주 조항은 5년간의 비연속적인 거주(11세 이후)로 변경되었고, 이것이 11세 이후의 학교졸업증명서에 의해서도 증명될 수 있게 했다.⁶³⁾ 하지만, 프랑스에서 출생한 이주 2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및 학업적응에의 어려움으로 11세 이후 고등교육기관에의 취학률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평가도 있었다.⁶⁴⁾

자아 정체성의 문제에 한창 민감할 나이에 본의 아니게 자신의 국적문제를 의무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경우, 이들은 종교/문화 정체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이 '알제리인'인지, '프랑스인인'지를 두고 갈등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추이에 따라 '악마화된' 무슬림의 정체성까지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국적을 통해 프랑스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63) Jean-Pierre Obin et Annette Obin-Coulon, *Immigration et Intégration*(Paris: Hachette, 1999), p.40.

64) Patrick Weil, "L'histoir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 une leçon pour l'Europe," p.68.

V. 맺음말-프랑스에서의 국적법 변화 추이와 그 의미

1980년대부터 부각된 무슬림이주자 2세대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자 국적법 개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주 문제, 특히 무슬림이주 문제에 민감했던 극우정당의 성장도 한몫했지만, 프랑스의 기성 정당들도 이주자들의 국적 획득을 더 어렵게 만드는 데 ‘모호한’ 동의를 했다.⁶⁵⁾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1993년 법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조건과 더불어, 증명하기 어려운 거주 증명 절차와 ‘의지 선언’ 절차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프랑스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이중속지주의 원칙은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국적취득이 이루어지던 데에서 여러 조건이 부과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폐기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다.

이후의 국적법 개정 또한 이주자들의 국적취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갔다. 2006년에는 프랑스에서 태어나도, 성년이 되어도, ‘의지 선언’을 해도, 이주자의 자녀라면 18세 이전까지는 국적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5년 동안의 비연속적인 거주증명 조항은 연속거주증명으로 재개정되었다. 게다가 200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주자의 2세대에 대한 국적취득심사의 권한이 각 도청(경찰청)의 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국적취득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자연히, 이주자의 소요사태 및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국적신청에 대한 거부 비율이 증가하였다.⁶⁶⁾

아직도 ‘알제리인과 프랑스인은 한 국민인가, 두 국민인가’라는 문제제기는 유효한가? 물론 역사적 맥락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적어도 국적문제에 있어서는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 탈식민화 시기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독립 이후에

65) 박단, 『프랑스의 문화전쟁』 (책세상, 2005) 제4장 참조.

66) 전세화, 「프랑스 국적취득조건의 변화 :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관점에서」 (연세대 학교 국제지역학 석사학위논문, 2010), 37쪽.

태어난 이주자 2세대들에게 이제 더 이상 프랑스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1973년 법까지만 해도 알제리인의 경우 이중속주주의에 따라 프랑스 국적이 여전히 자동적으로 취득되고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이 규정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했었다. 1973년 법이 제정될 때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인구문제가 중요했고 노동력이 필요한 국가였다. 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전통적으로 군대문제와 노동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적으로 개정되던 국적법이 이제는 첨단무기 사용으로 모병제가 도입되어 징집자 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첨단기술이 미숙련노동자를 불필요하게 만들어 감으로써 프랑스 국적도 점차 폐쇄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이주자 2세대의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제 출생만으로 저절로 프랑스인이 되는 일은 없고, 프랑스인이 되겠다는 스스로의 의지 표명이 더욱 중요해 졌다. 알제리이주자 2세대들은 스스로 프랑스인임을 표명해야 하고, 비록 '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나서 자란 국가를 자신의 국가로 인정해야 했다. 스스로 '새로운 프랑스 국민'이 됨을 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어도 국적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알제리와 프랑스는 별개가 되었다.

주제어 : 알제리, 알제리 전쟁, 무슬림 이민자, 알제리이주자 2세대, 국적법, 영광의 30년

(논문투고 : 2017.11.28 / 논문심사완료 : 2017.12.14 / 논문게재 확정일 : 2017.12.15)

참고문헌

- 김용우, 「식민주의와 이주-압델마렉 사이아드(Abdelmalek Sayad)의 경우-」, *Homo Migrants* vol.17(nov. 2017).
- 김진영, 「전간기 프랑스의 국적 정책 변화」(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노서경, 「식민지배의 기억 :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 사회」, 안병직(편), 『세계의 과거사 청산』(푸른역사, 2005).
- 노서경, 『알제리 전쟁 1954-1962 - 생각하는 사람들의 식민지 항쟁』, (문학동네, 2017).
- 박단,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서강대출판부, 2013).
- 박단, 『프랑스의 문화전쟁』(책세상, 2005).
- 발리바르, 에티엔, 『정치체에 대한 권리』, 진태원 옮김(후마니타스, 2011).
- 신동규, 「<영광의 날들(Indigène, 2007)> 에 나타난 북아프리카 출신 군인의 정체성: 프랑스와 식민지 사이에서 정체성 만들기」, *Homo Migrants*, Vol.9(Dec. 2013).
- 이경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인들의 해외 이주와 국내 이주」, 『서강인문논총』, Vol.45 (2016.4).
- 이재원, 「프랑스 공화국은 "알제 전투(batailled'Alger)"에서 운명을 다했는가?」, 『사림』 54권 (2015).
- 전세화, 「프랑스 국적취득조건의 변화 :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관점에서」(연세대학교 국제지역학 석사학위논문, 2010).
- 한명숙, 「1980년대 프랑스 국적법 논쟁을 통해서 본 무슬림 이민자 문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8-3집(2008).
- 한명숙, 「무슬림공동체의 현황과 국적법」, 『인문학연구』, Vol.10(2006).

한명숙, 「프랑스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문제, 1986-1993」, 『프랑스사연구』, 제20호(2009).

Assouline, David et Mehdi Lallaoui(s.d.), *Un siècle d'immigrations en France : 1945 à nos jours*(Paris : Syros, 1997).

Barbier, Maurice, *La laïcité* (Paris: L'Harmattan, 1995).

Blanchard, Pascal et Sandrine Lemaire, *Culture coloniale, la France conquise par son Empire (1873-1931)*(Paris: Editions Autrement, 2002).

Brett, Michael, "Legislating for Inequality in Algeria: The Senatus-Consulte of 14 July 1865."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51/3 (1988).

Brubaker, Rog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Feldblum, Miriam, *Reconstructing Citizenship : The Politics of Nationality Reform and Immigration in Contemporary France*(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Gastaut, Yvan, "Des Trente Glorieuses à la crise des banlieues", in *L'Histoire*, n.229(février, 1999).

MacMaster, Neil, "Islamophobia in France and the Algerian Poblem," in Qureshi, Emaran & Michael A. Sells (ed.), *The New Crusades : Constructing the Muslim Enemy*(Columbia Univ. Press, 2003).

Obin, Jean-Pierre et Annette Obin-Coulon, *Immigration et Intégration*(Paris: Hachette, 1999).

Schor, Ralph, *Histoire de l'immigration en France : de la fin du XIXe siècle à nos jours*(Paris : Armand Colin, 1996).

Stora, Benjamin et Emile Temime, "L'immigration algérienne", in Laurent Gervereau, Pierre Milza et Emile Temime(sous la direction de), *Histoire de l'immigration en France au XXe siècle*(Paris : Editions d'Art, 1998).

Stora, Benjamin, *Le Transfert d'une Mémoire : De l'Algérie française au racisme anti-arabe*(Paris : La Découverte, 1999).

Viet, Vincent, *La France immigrée, Construction une politique 1914-1997*(Paris : Fayard, 1998).

Weil, Patrick, "L'histoir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 une leçon pour l'Europe," in Patrick Weil et Randall Hansen(s.d.), *Nationalité et citoyenneté en Europe*(Paris: La Découverte, 1999).

Weil, Patrick, "Le statut des musulmans en Algérie coloniale Une nationalité française dénaturée", Association française pour l'histoire de la justice, *Histoire de la justice*, 2005/1(N.16).

Weil, Patrick, *La France et ses étrangers*(Paris : Gallimard, 1991).

Weil, Patrick, *Qu'est-ce qu'un français?*(Paris: Grasset, 2002).

Zehraoui, Ahsène, "Les Algériens, de l'immigration à l'installation," Philippe De- witte(s.d.), *Immigration et intégration l'état des savoirs*(Paris: Editions la Découverte, 1999).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789907p/f9.image>

(검색일자 : 2017.4.1.)

<http://legifrance.gouv.fr/affichTexteArticle> (검색일자 : 2016.12.1.)

<http://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 (검색일자 : 2016.12.1)

Decolonization and 'New French People' -Algerian Immigrants and Modification of Nationality Law

Dahn Park

This paper discusses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 Answer to questions: why the Algerian immigrants came to France in a large scale before and after the Algerian War of Independence and why they tried to get the French nationality despite Algeria's independence. Second - with regard to the process of acquiring French nationality, we examined the necessity of the French nationality law's amendment and willingness of the Algerian immigrants to acquire France nationality. Third - with reference to the nationality of second generation of Algerian immigrants in France, we reviewed the policy of the French authorities concerning the identity of immigrants.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hile trying to resolve the issues raised above, we found out that the French nationality problems of 1973 and 1993 were closely related. These problems were not just simple labor force issues but also the French identity issue.

Key Words : Algeria, Algerian War, Muslim Immigrants,
Nationality Law, Thirty Glorious Years